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 (매년 1회 측정)

오염물질 항목	미세먼지 ($\mu\text{g}/\text{m}^3$)	이산화탄소 (ppm)	폼알데하이드 ($\mu\text{g}/\text{m}^3$)	총부유세균 (CFU/ m^3)	일산화탄소 (ppm)
다중이용시설					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	150 이하	1,000 이하	100 이하	미측정	10 이하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	100 이하			800 이하	
실내주차장	200 이하			미측정	25 이하

비 고: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
실내공기질 권고기준 (2년마다 1회 측정)

오염물질 항목	이산화질소 (ppm)	라돈 (Bq/ m^3)	총휘발성유기화합물 ($\mu\text{g}/\text{m}^3$)	석면 (개/cc)	오존 (ppm)
다중이용시설					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	0.05 이하	148 이하	500 이하	0.01 이하	0.06 이하
의료기관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, 산후조리원			400 이하		
실내주차장			0.30 이하		1,000 이하

비 고: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.

<오염물질 별 인체영향 요인>

분류	오염물질	영향
유지기준 (연 1회 측정)	미세먼지	천식, 기침, 호흡기곤란 등
	이산화탄소	두통, 현기증 등
	폼알데히드	폐질환, 새집증후군 등
	총부유세균	호흡기질환, 알레르기성 질환 등
	일산화탄소	두통, 메스꺼움, 현기증 등
권고기준 (2년에 1회 측정)	이산화질소	호흡기질환, 폐수종 유발 등
	라돈	피부질환, 호흡기질환, 폐암유발 등
	총휘발성유기화합물	발암성 물질 흡입, 두통, 호흡기 자극 등
	석면	눈, 코 등 자극, 기침, 두통 등
	오존	호흡장애, 두통 등